

2000. 2. 26(토)
제57회임시회제4차본회의

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

總務委員會

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2. 16. 제 천 시 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0. 2. 16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0. 2. 23. (제5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지선대)

가. 제안이유

- '99. 12월 2차에 걸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제천시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시세 심의위원회 안건을 분장하기 위하여 각 분과를 두던 것을 분과를 삭제하고 위원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개정.
- 주민세, 소득세할증 신고납부분 및 부과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지토록 함에 따라(2001. 5. 1일시행)조례 중 주민세 소득세할 관련 규정 삭제등.

- 재산세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구체화.
-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개정 정비.
(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
→ 일할계산 신청시)
- 자동차세 소액부징수 금액을 1,000원에서 2,000원으로 상향 조정.
- 주행세 신설에 따라 세목, 세율, 납세의무자등 기본사항을 조례에 규정.
(♣ 참 고 :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납세지를 관할하는
시.군에서 휘발유, 경유,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
의무자에게 부과, 서울은 교통세액의 1,000분의 32)
- 농지세의 세율조정에 따른 정비.
(지방세법상 과세표준액의 1,000분의 3에서부터 초과금액의 100분의
50을 합하던 것을 100분의 40을 합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태훈)

- 법적검토
 - 동 조례는 '99. 12. 28일과 31일 2차에 걸쳐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
 - 개정조례안 제9조의 '시세 심의위원회'는 지방세법 제7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1항내지 6항 및 동규칙 제39조 1항, 3항 각호의 규정을 인용하였고,

- 조례안 제22조의2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의 경우,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과 일치하며,
- 특히 '99. 12. 28일 신설된 주행세 관련규정인 지방세법 제196조의 16 내지 제196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 14 내지 제146조의 16, 동 시행규칙 제82조의 8 내지 제82조의 9의 내용과 일치되는등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준칙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·도로(세제 13400-1234), 충청도에서는 '99. 12. 30일 각 시 군으로 통보(재무 13400-897)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아울러 본 시에서는 2000. 1. 11일 동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던 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어
- 2000. 2. 12일 “조례·규칙 심의회”에서 원안가결 통과된 것으로서 행정절차상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임.

○ 행정적 검토

-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2원화 운영되고 있던 것을 분과위원회 기능을 삭제하여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보완하는 것을 비롯, 세무서장이 주민세 소득할 중 일부분을 부과, 고지토록 함으로써 시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신설된 주행세의 세율, 세목등 기본절차를 규정하는등 효율적 세정업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1) 본 조례안의 교통주행세에 대한 과세대상 및 특별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? (민경환 위원)
- 2) 본 조례개정으로 인한 농지세 징수액의 증감사항은 있는가? (민경환 위원)

나. 답변요지 (세정과장 지 선 대)

- 1) 과세대상은 휘발유, 경유가 되고 과세표준세액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가 되며, 납세의무자는 휘발유, 경유에 대한 납세의무대표등이 울산광역시시장에게 납부하여 광역시장이 배분하게 됨.
- 2) 개정으로 세율을 조정해도 농민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므로 증감차이는 별로 없음.

5. 토론요지

없 음.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7. 심사보고 불임서류

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